

특정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2년 해빙기 대비 공사현장 특정감사 –

2022. 4. .



#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 수	금액	감 액	금액	추 징	금액
계		2건	2	0	0	0	0	0	0	0
1	◆ ◆ ◆ 과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부적정	1							
2	○ ○ ○ ○ 과	●●●● 정비 및 교량설치공사	1							

# 2. 처분요구일람표

1.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 1
2. ●●●● 정비 및 교량설치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 8

일련번호	1	감사자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군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0. 10. 8. ◆◆종합건설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과 공사계약을 하여 ‘◆◆◆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공사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계약금액	도급자	비고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행복문화센터, 생활체육관 1,684.37㎡ 신축	2020.10.8.~ 2022.11.29.	2,687	◆◆종합건설(주) (주)☆☆☆☆	

### 1. 안전관리 업무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하면 「건설  
 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항타 및 항받기)가 사용되는 건설  
 공사 및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받아야 하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등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건설 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 검토결과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판정한 후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출 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가설구조물의 공사를 할 때 관계전문가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받아야 하며, 해당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시공상세도면,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군 ◆◆◆과에서는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공사가 향타기 및 향받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및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나 해당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이 제출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검토·승인 없이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 2. 품질관리자 미배치 등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득한 후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0-720호)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면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및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품질관리의 적절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축법」 제25조제3항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법령에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건축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는 「건축사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사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해당 건축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자는 승인된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시험검사장비를 구비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가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2022. 2. 21. 경상북도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해빙기 대비 공사현장

특정감사일 현재까지 시험실을 설치하지 않고, 품질시험 항목 및 내용이 누락되는 등 품질시험계획이 부실하게 작성되었으며, 품질관리자 지정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군 ◆◆◆과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확인을 하지 않아 품질시험계획 미승인 및 품질관리자 미배치 등 품질관리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3. 시스템 비계의 강관 비계 변경 부적정

「건축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호)에 따르면 시스템 비계를 강관비계로 변경할 경우 조립도(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조립해체 순서도 등),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축법」 제25조제3항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법령에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건축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는 「건축사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사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해당 건축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자는 관련 법령,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비계를 조립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시공 중 결함이나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 및 안전조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건설공사 시공자는 아래 [사진 1]과 같이 설계도서에 시스템 비계로 적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립도, 구조계산서 및 시공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승인을 받거나 실정보고 없이 강관비계로 변경하여 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과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사진 1] 행복문화센터 강관 비계 설치 현황

행복문화센터 비계 설치 현황(측면)	행복문화센터 비계 설치 현황(정면)

#### 4.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검토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및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건설공사 시공자는 아래 [사진 2]과 같이 창호 위치 및 수량을 변경하여 설치하면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승인을 받거나 실정보고 없이 설치하여 일부 창호 손잡이가 기둥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군 ◆◆◆과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 [사진 2] 생활체육관 창호 설치 현황

생활체육관 창호 설치 현황	창호 손잡이와 기둥 간섭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실험실(장비) 미구비 등 품질관리 소홀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감사자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 ●●●● 정비 및 교량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군 ○○○○과에서는 ●●●● ●●●● 정비 및 교량설치공사를 [표]와 같이 ☞☞종합건설(주) ○○○과 공사 계약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다.

### [표] 공사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 ●●●● 정비 및 교량설치공사			축제정비 L=456m 교량개체 1개소	1,080	2020.5.4.	2020.05.11. 2022.01.23.	(주)☞☞종합건설 ○○○	

### 1. 품질시험계획 미승인 등 및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이하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장비를 구비하고, 20㎡이상의 시험실 설치 및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품질관리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 ○○○○과에서는 ‘●●● ●●● 정비 및 교량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초급 품질관리 대상임에도 품질시험계획서에 대한 검토나 승인 통보를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 및 품질관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 및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2. 공사감독 업무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제 49조 및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5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같은규정 제19조의2에 따라 감독자는 설계도면·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시공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공사추진 시 공사가 설계도서 및 공정계획표 대로 추진이 되었는지 공사 시행 단계별로 정밀히 확인·검측하여 공사시설물이 차질 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 ●●● 정비 및 교량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시공사에서 교대 배면방수를 시공하지 않고 되메우기 등 이후 공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 ○○○○과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3.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미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 설계에 공사용량 및 공사자재 등이 과다 산정되었거나 현장여건의 변동 등으로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 ●●●● 정비 및 교량설치공사 현장에 필요한 순성토(16,841m<sup>3</sup>)를 인근 토취장에서 직접 적재하여 운반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시공사에서 인근 공사현장의 장비를 이용하여 별도의 상차 작업 없이 순성토 운반작업을 하였음에도 ◇◇군 ○○○○과에서는 현재까지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000천원(제경비 포함) 감액 등의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설계에는 현장 내 진·출입 공간이 협소하여 식생호안블럭 운반을 소운반(덤프2.5톤)을 이용하도록 계획이 되었으나, 시공사에서 소운반(덤프2.5톤)을 이용하지 않고 식생호안블럭을 운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 ○○○○과는 소운반을 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 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사업비 1,569천원(제경비 포함)을 변경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000천 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